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사업의 예산불용 조사결과

1. 자체감사 요구사항(예결위 심사보고서, 2018. 12. 7. 의결)

- (지적사항) 사업비의 72.9%에 해당하는 금액을 불용 처리함으로써 적절한 예산집행으로 보기 어려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예산(46.5억 원) 전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한 것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국가재정법」 제48조를 위반한 것임.
- (시정요구사항) 문화체육관광부는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재재이월된 예산을 즉시 환수조치하고,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관련자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함으로써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기준을 엄격히 준수할 것

2. 조사결과(2019. 1. 21.~22./실지조사 실시)

① 예산불용 처리 관련

- 동 사업비로 편성된 예산은 2016, 2017년도 각 25억 원이며 전액 불용됨. 이는 정부 예산 편성 시 국비 지원을 하향 조정(100%→50%, 지방비 50% 부담)이 관계기관 간 협의가 안 되어 당초 정부예산안에 미 반영되었고,
- 이후 국회예산안 심의 시 사업 필요성이 인정되어 예산이 반영되었으나, 재정당국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이유로 수시배정¹⁾ 사업으로 지정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과)는 재정당국과 예산집행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지방비 50% 부담 부분이 협의가 안 되어 예산배정을 받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불용된 점이 확인되었음.

② 재재이월된 예산 환수 관련

- 동 사업의 주관부서(○○○○과)는 2015년 국고보조사업(민간자본보조)으로 교부한 46.75억 원 중 2018년까지 재재이월된 집행잔액 46.5억 원을 보조사업자인 ○○○○○○○○○재단에 2018. 7. 20. 반납결정 통보하였으며, 동 재단에서는 2018. 8. 7. 이자 등을 포함한 46.63억 원을 반납함.

1) 「국가재정법」 제43조(예산의 배정) 제4항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불구하고 개별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비의 재재이월 부적정

○ (관계 법령 및 판단 근거)

- 재재이월로 국회에서 지적받은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사업비는 2015년에 문화체육관광부가 국고보조사업자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교부조건을 붙여 국고 46.5억 원을 교부²⁾한 것임.(2018. 8. 전액 국고환수됨)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³⁾과 동 사업의 2015년 국고보조금 교부조건⁴⁾에 보조금의 재재이월을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⁵⁾는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내용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

○ (감사결과 확인된 내용)

- 그러나 담당부서(○○○○과)는 국고보조금이 재재이월이 되지 않도록 2017년에 환수조치를 하지 않았고, 보조사업자가 문체부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연례적으로 이월하도록 보조금 관리업무를 소홀히 함.
- 다만, 총사업비 관리 대상사업으로써 관련 지침⁶⁾에 따라 총사업비를 재정당국과 계속 협의하였으나 국고지원 비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전액 국고지원 근거마련을 위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여 2017. 12.에 개정됨에 따라 보조금 집행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

3. 조치계획

○ 국고보조금 집행관리 철저‘기관 주의’조치(‘③’관련)

※ 개인주의 조치하지 않는 사유

- 담당부서 변경 등 관련자가 다수이고 근무기간이 짧아 특정인에 대한 주의처분 곤란
- 전액 국고지원 근거 법률개정 및 기재부와의 총사업비 관련 협의노력을 기울인 점 등 고려

2) 동 사안은 「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의 이월에 해당되지 않기에, 동 법률 위반으로 보기에는 어려움

3) 국가재정법 또는 다른 법률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비를 재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음

4)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음

5)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총사업비관리지침 제23조(실시실계의 완료) 중앙관서의 장은 실시실계 용역이 완료되면 조달청장에게 공사계약체결 의뢰 이전(조달청장에게 공사계약 체결을 의뢰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경우 입찰 발주 이전)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